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제한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 등〉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8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제한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제한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 등

개정안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선정을 신청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시행령을 통해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신청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상향 입법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u>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u>“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u> 2. <u>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u> 3. <u>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u> 4. <u>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2조제6항-----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서 하
여금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²)는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에 대한 법률 문언상 표현을 구체화하고 (제1항), 선정 시 통보 및 게시 의무(제2항),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 중 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의무(제3항), 선정의 유효기간(제4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선정 절차, 신청자격,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재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위임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은 선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제4조 제2항3)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신청이 불가한 제한 사유도 규정하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해당 시·도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2. 지역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등 협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이 있을 것
3. 그 밖에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비교우위에 있을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3. 선정 사유

③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신청자격) ① 선도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공고일 기준, 해당 광역지역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업종을 영위하고 본사 및 사업장이 해당 광역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협업계약에 따른 협력업체(기관)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도기업을 신청할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고 있음.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규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제한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2조제3항)하고, 기업이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안 제12조제2항)함으로써 법령 상호 간 체계성 및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제한 사유가 법률에 명시될 경우, 이에 연동하여 선정기업이 사후적으로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신청제한 사유가 있었음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뒤늦게 알게 되었을 시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회사 또는 동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③ 선도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지역 내외), 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업계약에 따른 협업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협업체의 50% 이상을 지역중소기업(선도기업 포함)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협업체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3조에 안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안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청제한 사유에 사후적으로 해당하게 되거나 사후에 신청제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 규정의 삭제를 추진 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앵커 중소기업 등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업이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에 동의하나,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단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467